

행 정 자 치 부

주 의 요 구

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미이행

기 관 명 북구, 해운대구, 수영구, 기장군

내 용

「식품위생법」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[별표 17]의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식품소분·판매·운반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·운반·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나, 영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식품위생감시원 등에 의해 적발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[별표 23]에 따라 영업정지 7일(1차 위반)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, 식품접객영업자 중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5일(1차 위반)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.

그리고 같은 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청문을 하거나,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 처분을 하여야 한다.

따라서 「식품위생법」 위반사항을 적발하거나, 신고 받은 경우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, 고의반복 및 중대위반 행위에 대해

서는 형사고발¹³⁵⁾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.

그런데 부산광역시 북구, 해운대구, 수영구 및 기장군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[증거물(사진, 영수증 등) 확인 및 영업주 위반사실 인정 확인서] 하였거나,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「식품위생법」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영업주의 이의신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경찰에 고발조치 후 검찰의 처분¹³⁶⁾ 결정을 기다려 그 결과[혐의 없음(증거 불충분)]에 따라 행정처분(영업정지 7일, 15일)을 면제하는 등 행정처분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 하였다.

조치할 사항 북구청장, 해운대구청장, 수영구청장 및 기장군수는

[주의] 앞으로 「식품위생법」 위반으로 적발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하고, 고의반복 및 중대위반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행정처분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135) 매년 시·도에 시달된 「식품안전관리지침」에 의하면 무허가(무신고)제품, 무표시 제품, 표백제 및 황산알루미늄 처리, 발기 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 등 첨가 위해제품, 무신고 소분제품 및 유통기한 변조제품 등을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유통 경로를 추적조사하여 행위자 적발 후 형사고발 조치

136) 검찰의 처분은 위반사안의 고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혐의없음(증거 불충분) 또는 공소권이 없음으로 결정